

# 아동학대의 문제와 대책방안

## 1.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의 규정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당면 과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동 학대의 개념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인 신체적 학대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으며 훈육과 체벌의 혼돈이 계속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한국적 상황은 아동학대 특히 신체적 학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률, 인식도, 심도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커다란 편차를 극복할 수 없다. 신영화(1986)는 1년간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98%, 극심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27%로 발표했으나<sup>1)</sup>, 김광일·고복자(1987)는 가벼운 매를 맞은 경우가 58.0%, 심한 매를 맞은 경우로는 8.2%로 보고 되었다<sup>2)</sup>. 또한 허남순(1992)의 조사결과는 가벼운 신체적



李培根

유니세프 조정관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 부회장

아동학대에 대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합의된  
측정도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 조사의  
실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학대가 97%, 가벼운 구타의 경우가 3%로 나타났다<sup>3)</sup>.

신체적 학대의 발생률과 구타의 정도에 대한 커다란 차이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는 문제와 아울러 조사를 위한 합의된 측정도구가 없다는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허남순(1992)은 신체적 학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서 회초리나 손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이외의 신체부위를 구타하는 모든 행위 및 잔혹한 처벌이나 벌의 결과 신체적 상해를 주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한 노동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자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신체적 학대를 “아동이 공감하는 훈육의 목적 이외에 가정, 학교 또는 사회에서 부모나 친척 등 아동의 보호자나 교사 기타 성인들에 의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모든 고의적, 반복적인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합의된 측정도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 조사의 실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 2. 관계법의 개선

이배근(1993)의 전국 17개 도시 일반가정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170명과 그들의 부모 168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의 실태조사에서 87%의 아동들이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중도학대의 경우도 107 사례나 확인된 것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 데 사회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관계법을 개정·보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호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이 법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

- 1) 신영화,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2) 김광일·고복자,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률: 국민학교 아동의 경우」, 『정신건강연구』, 제6집, 1987.
- 3) 허남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한국아동복지의 새로운 방향』, 한국아동복지학회, 1992.

정인 동법 제34조 제3호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조치가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대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19조에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 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이 동법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시킨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는 찾아 볼 수 없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국가의 강제력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입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도 1차적으로는 사회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법의 제재나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피학대아동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로 나눌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는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추궁, 학대부모의 친권상실 선고와 학대교사의 내부적 징계가 있다<sup>4)</sup>.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는 형법 제260조에 부모의 정당한 훈육권의 행사를 제외한 아동의 신체에 대한 구타 등 폭행을 가한자는 폭행죄로 처벌되며, 형법 제276조는 어린이를 장시간 집에 가두고 외출한 경우에는 감금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 제274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자를 그 생명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위한 법적인 개입근거로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법적 장치는 없다.

4) 박군성, 「아동학대의 법적 고찰」,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 충남아동학대예방협회 제1회 세미나 자료집, 1991.

신체적 학대인 체벌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는 교육법 제76조의 규정과 동 시행령 제77조의 근신, 정학, 퇴학 등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벌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는 신체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인도한자는 인도를 받은자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 제271조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부모)가 아동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24조는 부모 또는 모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 이외에 아동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여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는 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아동복지법 제15조는 도지사도 법원에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상은 체벌의 사항이 되지만 살인, 성적폭행, 폭행치사 등의 극단적인 경우이거나 아동을 학대한 자가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학대인 체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는 교육법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77조는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벌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체벌교사의 형사적 책임문제와 폭행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여섯 건의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승소한 1건의 판례(대법 78조 203, 1978년 3월 14일자 판결)외에는 교사의 책임이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육교사가 학교운동장에서 반공훈련에 불참한 학생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로 학생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다(서울고법 1978년 6월 23일자 판결). 이에 비해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는 국·공립학교에서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아동에게 징계를 가할 수는 있으나 체벌은 가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학교장 및 교사의 징계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체벌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말하는 금지된 체벌은 넓게는 신체에 대한 실행행사 외에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구타는 물론 장시간의 기립, 혹사적 작업 명령 등을 금지하고 있다<sup>5)</sup>.

미국의 경우에도 가정이 하나의 신성한 사회제도이며 가정내

5) 안경환, 『체벌의 법적 문제』, 『교육상황에 있어서의 체벌』, 한국아동예방법학회 제3회 세미나 자료집, 1990.

---

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가족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다. 이것이 1975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이 국가의 의무적 서비스로 법제화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협약 당사국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제정, 보완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동 협약 제19조는 비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유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3. 제도적 개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한 또하나의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신고의식이 미약하고 신고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신고가 없어 1년만에 문을 닫았으며,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1989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신고건수가 96건에 불과했다는 보고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의무적으로 국가의 법적 인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한 또하나의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데 있다.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르웨이, 핀란드, 벨지움,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호주(4개주), 캐나다(9개주) 등이다.

한편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CDB위원회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개업의사, 행정업무담당관, 전문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기관 의뢰, 체계적인 사후지도 등을 실시한다.

지난 1989년에 발족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한국어린이재단 전국 16개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3년간 신고건수가 239사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내 또는 집단보호 시설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또는 국가의 제도적 개선에 의한 CDB와 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제2호의 보호조치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보고를 제도화하고 있다.

#### 4.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연결망의 구축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강조되어 왔으며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는 반면에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었다. 비록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 1988년에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

현장전문이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나, 정부의 법집행, 그리고 사회 일반에 있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6)</sup>.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 내지는 사망을 초래하고, 반복적인 구타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가정적 혹은 사회적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아동학대의 발견·치료·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요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한 편이다. 김광일·고복자의 연구(1987)에 의하면 아동구타나 아내구타에 관한 올바른 이해나 태도의 변화를 위한 공적,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이 결핍되어 있으며, 한국 부모들의 98%가 아들은 남성답게 딸은 여성답게 길러야 한다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신문, TV 등 언론매체가 가정폭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환기시키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 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결론

한국적 상황에 있어서의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 개입 및 발견을 위한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가정적 혹은 사회적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아동학대의 발견·치료·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요망한다.

6) 박군성, 「아동학대의 법적 고찰」,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 충남아동학대예방협회 제1회 세미나 자료집, 1991.

아동학대를 발견, 치료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동학대를 발견, 치료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대표적 유형인 신체적 학대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사랑의 매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으며 훈육과 체벌의 혼돈이 계속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여도 그 실효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전문직들간의 팀웍(Inter-professional team work)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존 관련법의 개정 또는 보완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인 아동복지법(제18조)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법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제재도 매우 미약하다. 또한 교육법 제76조는 체벌을 수용하고 있는 바, 훈육의 목적이라 하여도 이는 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신고의식이 미약하고 신고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아동학대가 은폐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인 특성에 의해 부모나 어른들에 대한 아동들의 일방적인 순종과 존경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또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법조계, 의료계, 학계 기타 모든 전문직들을 포함하는 연결망 구축(net-working)이 시급히 요청된다.